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93호
- 나. 발 의 자 : 문형주 의원
- 다. 발의일자 : 2016. 11. 4.
- 라. 회부일자 : 2016. 11. 8.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중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하여 조성되는 수입은 실질적으로 “전출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므로 동 기금의 조성재원의 명칭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재원 중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함 (안 제3조제2호).

IV.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4일 문형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93호로 발의되어 2016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재원의 명칭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설립 및 제주연수원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조성재원은 동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제1호)과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제2호), ‘기금의 운용수익금’(제3호) 및 ‘그 밖의 수입금’(제4호)으로 마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중 ‘출연금’이란 용어는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기금재원을 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오해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 ‘출연(出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¹⁾’로 정의되어 있으며,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 2015.7.)에서도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세출항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법제처에서도 정부 등 주체를 기술하고 기금으로 재원을 이동하는 경우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로부터 기금으로의 재원 이동인 경우에는 ‘전입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²⁾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동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에 따른 기금 조성은 교육청의 재산상 손실 및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이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가 아닌 자체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재원을 의미하는 바,
동 조례안과 같이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불명확한 법 적용어의 사용에서 오는 혼선을 방지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8058700>), 2016.12.12.

2) ‘알기쉬운 법령입안상식’, 법제(2003.3) 116쪽

관 계 법 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6.5.29.] [법률 제14157호, 2016.5.29., 일부개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